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하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등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

○ 조례의 적용기준 명시(안 제2조)

-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함

나. 세입·세출에 관한 사항

○ 세입(안 제4조)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

▶ 위탁수수료, 임대료수익, 주차료수익

▶ 이자 및 배당금, 관리비수익, 기타 잡수익

-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○ 세출(안 제5조)

-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, 운영비등 보조

- 예비비 등 기타

다.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

○ 잉여금에 대한 처리 명시(안 제7조)

-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함
-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

3. 제정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4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2009년도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예산편성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8.9.11~10.1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10.9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한다.

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마포구에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
 - 가. 매출수수료
 - 나. 임대료수익
 - 다. 주차료수익
 - 라. 이자 및 배당금
 - 마. 관리비수익
 - 바. 기타 잡수입
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, 운영비 등 보조
2. 예비비 등 기타

제6조(일시차입) ①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잉여금의 처리) ①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.

②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